

##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담당자: 조진서 캠페이너, 02-3478-0529, info@apil.or.kr)
제 목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일 자	2021년 10월 7일 (총 8쪽)

### 이주어선원 183명, 여권 불법 압수 관행 근절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

- 이주어선원들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촉구 결과 선원법에 2021년 6월, 여권압수 금지조항 신설
- 그러나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약 90%가 여권 압수 상태임 밝혀져
- 여권압수 당한 이주어선원 당사자 183명, 해양수산부에 관행 근절 촉구하며 공동진정 제기
- 여권압수한 기관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1. 국가인권위원회와 나오미센터 그리고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021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221명의 이주어선원을 대상으로 여권 압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한 221명 중 여권을 압수당한 183명의 이주어선원이 2021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권을 되돌려 줄 것과 압수 기관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어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은 지난 10년 동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2012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169명의 설문 응답자 중에서 약 78%가 여권을 압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실태조사에서는 221명의 설문 응답자 중 90%정도가 여권을 압수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수산업은 이주어선원의 노동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주어선원들은 정부, 선주, 노조 등 그 누구로부터도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주어선원들이 여권까지 빼앗기게 되면 노동착취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당하기 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4. 설문조사를 진행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여권 등 신분증의 압수는 대표적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식별 지표인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섬에서 조업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의 여권이 많이 빼앗겼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섬을 떠나기 위해 배를 타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설문조사 결과, 이주어선원들이 자신의 여권을 빼앗은 기관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관할 지역 수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협이 그동안 공적기관으로서 이주어선원의 송출입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송입업체가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송입업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닌 수협이 관리감독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협이 이주어선원의 송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6. 화우공익재단의 이현서 변호사는 “신설된 조항은 선박 소유자 이외의 기관이 여권을 압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협이나 송입업체의 여권 보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이행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인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여권압수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이주어선원의 40%가 여권을 압수당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나 수협중앙회나 송입업체 등에 이주어선원의 여권을 압수하지 말고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라는 그 흔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

8.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약 50%의 이주어선원이 여권과 함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함께 압수를 당했다는 것이다. 선주 등은 여권을 압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이주어선원을 배에 묶어두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다. 이주노조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선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압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에서도 그러한 위법성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선주들은 이주어선원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인간답고 차별적이지 않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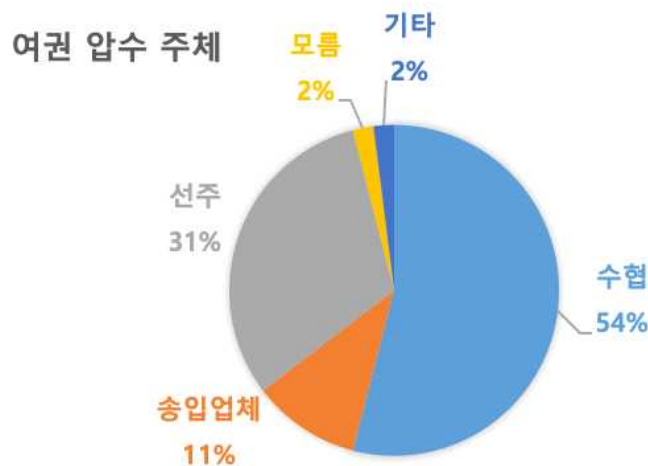
1. 국가인권위원회, 나옴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실시한 E-10 이주어선원 대상 여권압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2.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원회, 나옴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실시한 E-10 이주어선원 대상 여권압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나옴센터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2021.09.07-2021.09.27 실시한 E-10 외국인 선원 여권 압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승선 이주어선원 10명 중 9명이 여권을 압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83명은 여권 반환을 위한 진정 절차 진행 의사를 밝혀 2021. 10.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 본 설문조사에는 총 221명의 E-10 체류자격 소지자(214명,96.8%)와 과거 E-10으로 한국에 체류했으나 현재 미등록 상태인 이주어선원(7명, 3.2%)이 참여했다. 국적으로는 베트남(64.3%), 인도네시아(34.8%), 중국(0.9%) 선원들이 참여했으며, 거주 지역으로는 제주(62.9%), 강원(13.1%), 경남(6.8%), 전남(6.8%), 부산(6.3%)등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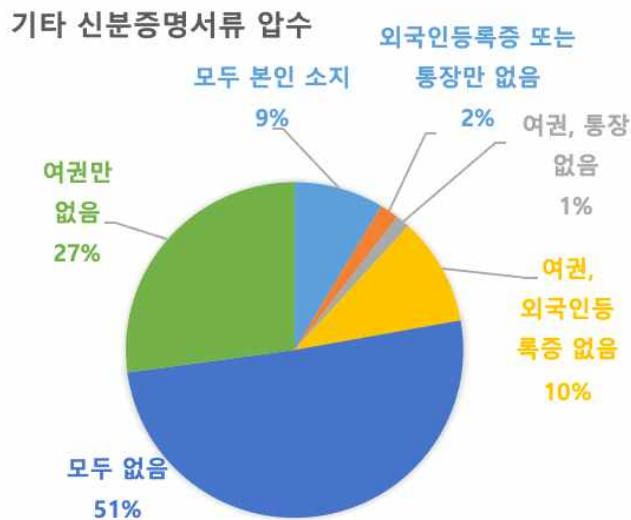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어선원 221명의 89.6%인 198명이 현재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여권 압수의 주체로는 수협(54.0%)이 가장 많았고 선주(31.3%), 송입업체(10.6%)가 뒤이었다.



여권을 빼앗긴 시기로는 한국에 입국한 후(68.2%)가 가장 많았고, 이 중 최소 5명은 2021. 6. 15. 선원법 제50조의 2가 신설되어 여권의 대리보관이 금지된 이후 여권을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7명은 여권 반환 요청을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환 요청을 하지 못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두려워서(48.4%)”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반환 요청을 했으나 며칠 뒤 다시 압수당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압수당한 선원도 각각 62.0%,47.1%나 되었다. 112명(50.7%)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통장을 모두 압수당한 상황이었다.



특히, 다른 동료들이 이탈한 이후에 여권을 빼앗긴 선원도 있었으며, 선원이 도망갈까봐 선주가 두려워서 선주가 여권을 가져가는 것 같다고 한 응답도 있었다. 이처럼 여권 및 신분증 압수는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인정하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의 수단 및 식별 지표에 해당한다.

이번 설문조사로 여권의 ‘대리보관’을 금지한 지난 6월 선원법 개정이 전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리보관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대부분의 선원은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이며, 한국 어업에서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여권 압수 근절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기자회견문

### 인질이 된 이주여성: 여권압수 관행을 근절하라

오늘 이주여성 183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권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집단 진정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주여성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은 지난 10년 동안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2012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169명의 설문 응답자 중에서 약 78%가 여권을 압수당했다. 2021년 9월 나오미센터와 선원이주여성인권네트워크가 행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221명의 이주여성 중 90%정도가 여권을 압수당했다.

한국의 수산업은 이주여성의 노동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은 정부, 선주, 노조 등 그 누구로부터도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이주여성들이 여권까지 빼앗기게 되면 인권 침해를 당해도 탈출할 수 없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당하기 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이주기구(IOM)와 같은 국제기구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식별 지표로 여권과 같은 신분증의 압수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여권 압수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눈 감아왔다. 2012년 이주여성의 여권 압수 관행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여권 압수를 금지하는 대신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동의서를 징구 받는 조건으로 이주여성의 여권 압수를 정당화를 해주었다.

2021. 6. 15. 선원법 제50조의 2를 신설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 규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벌칙이 과태료 500만원이하로 너무 약하고 여권 압수 금지 주체를 선주로 한정해 놓고 있다.

선주만 여권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놀랄만한 결과는 이주어선원들은 자신의 여권을 가장 많이 빼앗은 기관으로 관할 지역 수협을 꼽았다는 점이다. 이것만 봐도 수협은 이주어선원의 송출입 과정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원법 제50조의2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법만 해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나 수협중앙회나 송입업체 등에 이주어선원의 여권을 압수하지 말고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라는 그 흔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약 50%의 이주어선원이 여권과 함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함께 압수당했다는 점이다. 선주 등은 여권을 압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이주어선원을 배에 묶어두는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선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이주어선원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인간답고 차별적이지 않은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을 빼앗긴 이주어선원 183명을 위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양수산부에게 여권 압수 관행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이탈한 사람을 포함해 이주어선원들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
2. 이주어선원의 여권을 압수한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라.
3. 이주어선원의 송입송출 과정에서 여권 압수 등 인권침해에 앞장서 온 수협을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라.
4. 이주어선원이 다시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이 압수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선원법 제50조의2의 여권 압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개정을 하라.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오미센터, 성요섭**

노동자의 집, 이주와인권연구소, 한삶의집, (재)화우공익재단), **아시아의 창,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성서공단노동조합,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동행,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방문시민모임 마중**